

#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규칙

제 정 2023. 12. 29.

개 정 2024. 03. 19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 직제규정 제4조(조직) 및 제17조(미래전략연구센터)에 의하여 설치된 미래전략연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칙은 센터에 한하여 적용하며,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제규정 및 제규칙에 의한다.

**제3조(운영원칙)** ①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 운영에 관해서는 미래전략기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에 따른다.

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
**제4조(기능 및 사업)** 센터는 전북의 미래비전과 장기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4.3.19.>

① 미래 정책의제 발굴 및 연구

② 국내외 정책 및 연구동향, 도정현안동향 분석 연구

③ 기획 및 미래전략 연구의제 발굴을 위한 원내외 활동지원

④ 국책사업발굴을 위한 연구 업무

⑤ 석좌연구위원 운영 및 원내외 활동지원

⑥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

**제5조(조직 및 인력)** ① 센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장 직속 조직으로 설치·운영한다.

②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, 연구인력으로 구성하며, 센터장은 연구본부장으로 하고, 연구인력은 원장이 임명한다.

1. 센터장은 원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센터를 대표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장이 센터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.

2. 연구인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며, 내부인력, 석좌연구위원, 외부 초빙연구위원, 위촉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.

**제6조(사업계획 등)**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**제7조(문서관리)** 센터의 문서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결재하며 그 밖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위임전결규칙에 따른다.

### **부 칙** <2023.12.29>

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** <2024.3.19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날로 부터 시행한다.